
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제2호 중 “갑상선선량”을 “갑상샘선량”으로 한다.

제39조를 제39조의2로 하고,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)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(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·복용지시에 한정한다)의 시행 또는 같은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와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연락처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,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·관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·보완
5.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·폐기 지원

6.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·안내 지원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5조(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)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”라 함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 또는 평가한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25조(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갑상선선량</u> 을 기준으로 시간당 5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	2. <u>갑상샘선량</u> ----- ----- 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39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)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(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갑상샘 방호약품 배포·복용지시에 한정한다)의 시행 또는 같은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

	약품 사전 배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와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연락처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제39조 (생략)	제39조의2 (현행 제39조와 같음)
제40조(업무의 위탁) ①·② (생략)	제40조(업무의 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2.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약품 비축·관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·보완
2.·3. (생략)	3.·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
<u><신 설></u>	5.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·폐기 지원
<u><신 설></u>	6.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·안내 지원